

『법학논총』

논문 투고 규정

제정: 2006. 3. 18
개정: 2007. 10. 5
개정: 2008. 11. 5
개정: 2012. 12. 20
개정: 2015. 10. 1
개정: 2016. 2. 1
개정: 2019. 11. 22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『법학논총』에 게재 할 논문의 작성요령 및 게재신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투고자격)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『법학논총』에 게재할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. 단, 공저의 제2저자 및 제3자 등의 경우 제2조 제1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으로서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는 『법학논총』에 게재할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1.22.>

1. 연구소 학술행사에서 논문을 발표한 자 및 법학연구소에서 기고를 청탁한 자
2.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의 교원 및 법학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
3. 초빙연구원이거나 이었던 자
4. 법률분야의 실무종사자
5. 대학원생으로서 박사학위 수료 이상의 자
6.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

<개정 2015.10.1.>

② 동일 작성자의 논문을 『법학논총』에 2회 연속하여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법학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또는 법학연구소에서 기고를 청탁한 논문은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5.10.1.>

③ 『법학논총』에 게재할 논문은 법학 전문 학술지에 게재될 수준의 법학 관련 연구논문 또는 판례평석이어야 한다. <개정 2015.10.1.>

제3조 (논문의 제출) ① 『법학논총』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를 희망하는 호에 따라 발행예정일의 3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8.11.5.>

② 투고 원고는 『법학논총 원고 작성 요령』에 따라 국문 제목, 국문 초록, 국문 주제어 및 영문 제목, 영문 초록, 영문 주제어를 포함하여야 하며, 각 초록은 200자 원고지 3배 내외로서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0.1.>

③ 투고 원고는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홈페이지(<http://dkulawstudy.jams.or.kr>)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2.1.>

④ (삭제) <개정 2016.2.1.>

- 제4조 (논문의 형식)** ① 논문은 연구논문, 판례논문, 학술발표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·제출한다.
②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(국문 및 영문), 필자 성명(국문 및 영문), 소속과 직위, 학위, 주소, 전화번호(사무실, 자택, 이동전화), 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.
③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(A4용지 20매)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, 300 매를 초과할 수 없다.
④ 논문의 본문 및 각주의 형식은 별도로 정한 논문발행규정에 따라야 한다.

- 제5조 (논문접수)** ① 게재신청 원고의 접수 및 문의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편집 간사가 담당한다.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법학연구소장 명의로 논문게재예정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다.
② 접수된 원고가 『법학논총』 원고 작성 요령』에 따르지 않은 경우 편집간사는 그 원고의 접수를 취소하거나 원고의 작성자에게 수정하여 재투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<개정 2015.10.1.>

- 제6조 (논문게재안내)** 『법학논총』의 마지막 장에는 다음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형식에 대한 안내문을 실는다.

- 제7조(논문의 이용허락)** 논문제출자는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『법학논총』에 게재한 논문 기타 원고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복제, 출판, 공중전송, 배포할 권리를 인정하며, 이에 관한 별도의 금전적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5.10.1.>

- 제8조(심사료, 게재료)** 『법학논총』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가 원고를 제출할 때 연구소는 소정의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. 제출된 원고의 게재가 확정된 때에는 연구소는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.
<개정 2015.10.1.>

부칙[2006.3.18]

이 규정은 200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07.10.5]

이 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08.11.5]

이 규정은 200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13.1.1]

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15.10.1]

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16.2.1]

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19.11.22]

이 규정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